참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고용 촉진을 위해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 대상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고용한 사업주

다음 하나에 해당 해야하며, 구직등록을 해야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실업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지원내용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고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6개월 단위로 지급
- 6개월간 중소기업 36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원)

지원제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02-2004-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02-580-4972~5, 4956,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02-3468-4703, 4708, 4709, 4711~6, 4732,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02-2142-8420,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02-2639-2403~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9393~4, 9396~7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032-460-4811~4816, 4869, 4781, 4988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032-540-5641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032-540-2050, 2051~3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센터	032-320-8972
	부천지청	김포고용복지+센터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센터	031-920-3937, 3962~4, 3957~8, 3988, 3978, 3928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지+센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센터	031-739-3170, 3122, 4991, 4916
	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센터	031-463-0761~4, 0767, 0768, 0769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031-412-6946~6948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센터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복지+센터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고용복지+센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033-769-0960, 0942, 0946
	태백지청	태백고용복지+센터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복지+센터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고용복지+센터	033-371-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고용복지+센터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051-760-7210~9,7244~7247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051-330-9951~9955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센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센터	055-330-6430~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센터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센터	055-760-6751~6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	055-650-1811~3, 1893~4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053-605-6460~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센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센터	054-851-8062
광주청	광주청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062-960-3200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센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0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063-840-6523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센터	063-450-0637
	군산지청	부안고용복지+센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061-720-9164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061-798-1908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센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센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고용복지+센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041-851-8507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센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센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센터	041-930-6259,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064-710-4462, 4470

www.moel.go.kr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고용노동부

01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개요

지원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악화된 경기상황에서 고용상황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 지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참고) 지원 대상 및 요건, 방식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강화(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시행기간 '20.7.27.~'20.12.31.(한시)

지원대상 사업장

사업시행기간중 지원대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시 지원

지원 요건 및 수준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등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대 6개월간 지원

- 중소기업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 중견기업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 지원)

* 정규직채용시 6개월 지원후 6개월 추가 지원 가능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

02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세부 지원요건

지원 대상 실업자(구직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구직등록을 해야함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에 따른 취업촉진 대상자 :

'20.2.1.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 고용센터(Work-net),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의사를 등록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새로 고용된 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 사업주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감원방지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고용후 1년

신청 및 접수

1개월 고용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상 '특례지원'표시하여 작성*하고,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신청서식은 '사업시행공고' 첨부양식 참조

지원 흐름도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대상자 채용	1개월 이상 고용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필요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으로 확인가능

코로나19 이후 퇴사 등으로 실업 중인 취업촉진 대상자는 구직등록 후 워크넷에서 아래 지원 대상확인서로 확인가능

[지원대상확인서 서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사업장소재 고용센터